

목차

머리말 2

쉽게 풀어 쓴 학생인권조례 4

학생인권조례 Q&A 13

학칙 개정 사례 소개 22

대안 학칙 (예시) 27

꼬리말 52

초판 1쇄 인쇄 2012년 2월 27일 초판 1쇄 발간 2012년 2월 29일 저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학칙개정대응팀 발행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후원 진보 교육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머리말

2011년 12월 19일 오후 6시 35분께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뒤이어, 박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012년 1월 26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에 조례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모두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초중고의 학칙은 대부분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 학칙 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애매모호하게 말만 바꾸어 내놓은 학칙을 개정된 학칙이라 주장하며 실질적인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다고 학생들의 인권이 바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학교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학교규칙을 바꿔야 하고, 또한 학생들이 직접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학생인권조례보다 더

나은 학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학칙 개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조차 잘 모르며, 알고 있더라도 학칙 개정 절차가 간단하지 않아 학칙 개정에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나로는 학생들이 직접 학칙 개정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본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본 소책자는 학칙 개정에 대한 정보를 마땅히 얻을 수 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소책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뽑아서 표현을 조금 더 쉽게 바꾼 <쉽게 풀어 쓴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수록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와 학칙 개정에 대해 궁금해 하는 점과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Q&A>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례가 시행 중인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학칙 개정이 잘 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학칙 개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요. 마지막으로는 학칙 개정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대안 학칙>을 소개합니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http://asunaro.or.kr/>

쉽게 풀어 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내용이 궁금하지만, 인터넷에서 검색을 열심히 해보지 않는 한은 학생인권조례 내용도 잘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을 뽑아서 표현을 조금 더 쉽게 바꾼 '쉽게 풀어 쓴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2011년 12월 19일 통과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 광주 등 다른 지역의 내용과는 좀 다를 수 있으니 먼저 확인 바랍니다.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학생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모든 학교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학칙 등 학교의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 4조 (책무) 교육감, 학교를 세우는 사람, 경영하는 사람,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학생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학생은 인권에 대해 배우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학생은 교사, 다른 학생 같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참여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만들어진 규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사회적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어디서 태어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말을 쓰든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임신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가족이 어떻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피부색이 검든지 희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여자를 사랑하든지 남자를 사랑하든지, 예전에 차별을 받았든지 않았든지, 성적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는 이유들로 차별받아서 안 된다.

학교를 세운 사람, 경영하는 사람, 학교장, 교직원은 위에 있는 사유들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 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그 누구로부터도, 맞거나

기합, 성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괴롭힘 같은 어떠한 폭력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 7조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교육감, 학교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사고가 일어난 경우엔 신속히 피해자를 구조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협력해야 한다.

제 8조 (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할 권리가 있다.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등의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들을 심하게 경쟁시키지 않아야 하고 과도한 선행학습을 시키지도 말아야 한다.



제 9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야자), 보충수업, 방과후학교 같은 정규교과 이외의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에게 야자, 보충수업 등의 수업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마음대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행사에 참여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0조 (휴식을 취할 권리) 학생은 너무 많은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하게 쉴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이 하고 싶지 않은 정규 수업이 아닌 활동을 강제로 시켜서 학생들을 쉬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

제 11조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머리카락, 옷 입는 것 등 겉모습에 있어서 자유롭게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복장에 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 13조 (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 학생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를 해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소지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만 해야 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학교장,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과 전자기기의 소지와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이 만들거나 고친 학교 규칙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시간, 사용하는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제 14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학생은 가족이 누구인지, 친구들이 어떠한지, 성적이 어떠한지, 병이 있는지, 징계를 받았는지, 교육비를 안 냈다든지, 남자를 사랑하든지 여자를 사랑하든지와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에게 학교 밖에서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5조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학생은 자신에 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볼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신과 관련된 학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에 관한 기록 중 잘못된 내용,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고치거나 지우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돈을 쓴 내역 등의 재정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제 16조 (양심·종교의 자유) 학생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믿을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학교는 학생의 생각과 다른 반성, 서약, 진술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학생이 대신할 수업 없이 원치 않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 17조 (의사 표현의 자유) 학생은 글로 쓰든, 말하든, 그림을 그리든,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을 권리,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학교 안에서의 집회의 경우 학습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칙으로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이 표현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학교는 교지,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 학생이 표현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해야 한다.



제 18조 (자치활동의 권리)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다른 학생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학교는 이런 활동들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학교는 성적이 낮거나, 예전에 징계를 받았거나 하는 이유로 학생회나 다른 조직에 참여를 못하게 해서 안 된다.

제 19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칙이나 학교 규정을 만들거나 바꾸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은 학칙이나 학교 규정을 학생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할 수 있게 바꾸어야 한다.

제 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 만나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학교,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이 있는 일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학생회 같은 학생자치조직은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21조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학생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진로를 찾을 때 등에는 학교에서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권리를 지키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예산을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

제 22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나 교육감은 깨끗하고 도서관,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냉방과 난방이 잘 되는 등의 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23조 (급식에 대한 권리)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로 안전하게 만든 급식을 먹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알려야 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대해 의견을 학생들에게 물어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감은 환경에 좋은 급식,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급식,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24조 (건강에 관한 권리) 학생은 건강해야 할 권리를 가진다. 여학생은 생리 때문에 아파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25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생은 벌을 받을 때 받는 이유에 대해 미리 알림을 받아야 하고, 벌을 받을 때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변명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자기 대신 자기를 도와서 얘기해줄 사람을 둘 수 있고, 그제 벌을 받을 일인지 공정한 과정을 통해 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는 벌을 줄 때도 벌을 받는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학교는 벌을 받은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되고, 학교는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 지도 방법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26조 (권리를 지킬 권리)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인권을 지키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 27조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학생, 그리고 누구든지 학생 인권이 침

해당하는 일에 대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하거나 조사할 것을 요청하거나, 학교,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남에게 함부로 알려져선 안 되며, 그것 때문에 해를 입어서도 안 된다. 학생인권옹호관과 학교장, 교육감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줘야 한다.

제 28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교육감, 학교는 가난한 학생, 장애가 있는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일을 하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필요로 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감, 학교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없애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취업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교육감, 학교는 특히 남자를 좋아하는지, 여자를 좋아하는지와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되고, 학생의 안전상 급할 경우에도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교육감, 학교는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해 교내외 교육활동을 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적절히 교육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교육감, 학교는 가난한 학생이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 같은 교육활동에 참가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 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을 할 때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하고,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한국에 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상관없이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 또한 서울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학

교에 전학, 입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은 외국에서 얻은 학력에 맞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 29조 (학생인권교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 47조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는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Q&A

Q. 학생인권조례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건가요? 간접체벌은 허용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A. 체벌 역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으로 간주하고 금지됩니다. 사실 체벌은 이미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입니다. 매를 이용하거나 손바닥, 주먹, 발길질 등으로 직접 학생을 때리는 체벌이든, 오리걸음, 앞드려뺨쳐 등 기합, 얼차려를 주는 체벌이든, 둘 다 모두 체벌이고 폭력이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체벌 외에도 언어폭력이라든지, 성폭력, 따돌림, 괴롭힘 같은 모든 종류의 폭력은 금지됩니다.

Q.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야자)과 보충수업 참여를 강요합니다. 야자, 보충수업 등은 강제로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A. 학교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같은 정규 수업 이외의 활동 참여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발적 뜻에 따라서 참여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것들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됩니다.

Q. 머리카락은 길이만 마음대로 기를 수 있나요? 아니면 파마나 염색까지 가능한가요? 교복 입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교복도 자유인가요?

A. 머리카락의 길이, 파마, 염색은 학생 자율적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길이만 자유, 파마나 염색 등은 학칙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게 되었지만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경우는 두 발에 관해서는 완전한 자유화를 원칙으로 해서, 파마, 염색 등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교복(복장)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학생들에게 복장의 자유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학생들이 정한 학칙으로 학교에서 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Q. 소지품 검사는 금지되나요?

A. 마음대로 하는 소지품 검사는 학생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에 위협이 가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금지됩니다. 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Q. 학교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수업시간에 사용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휴대전화 말고도 다른 전자기기 (MP3, PMP 등등)도 소지해도 되나요?

A. 학교는 학생의 핸드폰이나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업시간 같은 때는 학생들이 이를 사용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한 학칙으로 수업시간 등에는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Q. 학교에서 듣고 싶지 않은 종교 수업(채플)을 들으라고 강요합니다. 수업에 불참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하네요. 대체 과목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A.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해선 안 되고 대체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지침이나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한 원칙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도 예배, 채플 등의 종교 교육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정 종교 과목의 수강, 종교 행사 참여) 그리고 학교는 이런 종교 과목 수강을 원치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대체 과목을 마련해야 합니다.

Q. 동성애 허용, 뭐 그런 말이 있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애초에 "동성애 허용"이란 말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 같은 성별의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든, 다른 성별의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든(이성애), 그런 것들은 누가 허락하고 금지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것이지요. 학생인권조례는 감히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를 비롯해서 성소수자인 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할 뿐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같은 성별의 사람을 좋아하는지 다른 성별의 사람을 좋아하는지 등의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이나 "성별 정체성"(스스로가 남자라고 생각하는지 여자라고 생각하는지 등의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적 지향 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거나, 성적이 좋으나 안 좋으나,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나이가 많느냐 적느냐, 피부색이 무슨 색이냐 등 다양한 이유에 따른 차별을 모두 금지하고 있지요. 따라서 우리

가 다른 학생들이나 교직원, 학교 정책 등으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게 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차별을 하지 않고 학교 안에서 차별이 없어지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학교 내에서 집회를 마음대로 열 수 있나요?

A.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모여서 이야기하고 토론을 할 권리, 모여서 같은 목소리를 낼 권리 등을 모두 뜻하지요. 다만 학교 안에서의 집회는 너무 시끄럽거나 하면 다른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Q. 학교 급식의 질이 안 좋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학교에 제출하려 했는데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설문조사나 서명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A.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당연히 학교가 서명이나 설문 조사 등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교지나 학교 신문에 학교를 비판하는 글을 검열 받아서도 안 되고요.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자기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Q. 여자인데요, 생리할 때 아파서 수업에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A. 2006년부터 학교에서는 "생리공결제", 즉 생리통 때문에 결석을 하더라도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학교들이 생리공결제에 대해 제대로 보장을 해주지 않고는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건강권의 일부로 생리공결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생리할 때의 고통으로 수업에 빠져도 학교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Q. 학교에서 체벌을 하지 않는 대신에 상벌점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점을 너무 많이 주고 오히려 징계가 더 늘어난 거 같습니다. 상벌점제는 인권침해가 아닌가요?

A. 상점이나 벌점을 주는 것이 그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하긴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는 상벌점제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점과 상점을 주는 기준이 너무 교사 마음대로라거나, 반인권적인 경우도 많고, 벌점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도 못하거나 과도한 징계로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뺏기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무더기로 퇴학을 당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는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 지도 방법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시행되는 상벌점제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고치거나 없애도록 학칙 개정을 요구해보는 게 어떨까요?

Q.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는데... 우리 학교 학칙이나 생활규정도 바뀌는 건가요?

A.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들도 학칙과 생활규정을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쳐야만 합니다.

또한 학칙이 고쳐지기 전이라고 해도 우리에게서 당연한 인권이 있으며, 서울학생인권조례도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가지고 시행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칙이 고쳐지기 전이어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일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우리 학교는 사립학교라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적용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A. 학생인권조례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서울에 있는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적용을 받습니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사이에는 교원 징계 절차나 이사회의 권한 등 운영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립학교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세워지고, 교육청의 감독을 받아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사립학교여도 당연히 학생인권조례의 적용을 받고,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 뺨을 치는 교사나 교장이 있으면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해주세요!

Q. 학생들이 학교운영이나 학교 규칙을 고치고 새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A.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학칙 등 학교 규정을 만들고 고치는 데에 참여할 권리,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은 학생회나 다른 방식으로 학교운영이나 학교 규칙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규칙을 고치자고 의견을 내면, 학교에서는 "학교규칙소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전체 학생들과 학교 구성원들(교직원, 학부모 등등이 있겠죠?)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학교규칙소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학교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장, 교직원들이 학생대표와 정기적으로 면담을 해서 학생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

니다. 우리들은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전달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그밖에도 여러 방법으로 우리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개모집하고 추천으로 선발하는 "학생참여단"(서울에서 100명 이내로 뽑습니다.)에 참가하여 학생인권 문제와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학생참여단"이 되어서 자기 학교 자기 지역의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초중등교육법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동등한 운영위원으로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건 참 아쉬운 일이지만요.

Q.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우리 학교는 그대로예요! 왜 그렇죠?

A. 어떤 학교들은 일부러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 규칙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지 않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학교에 직접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알리며 학칙을 고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서명운동을 하며 학칙을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뜻을 모아서 학칙을 고치라고 요구해도 학교가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수나로 같은 청소년인권단체나 '학생인권옹호관',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부서 등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Q. 학교에서 규칙을 바꿀 때 다른 학생들에게는 안 알리고 학생회장이랑 학급회장들 몇 명만 불러 모아서 대충 바꿨대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A. 학생들 전체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렇게 바뀐 학교 규칙에 불만이 있다면 다시 고치라고 요구해봅시다. 지금 학교의 학생회는 안타깝게도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때로는 일부 학생회 임원들이 자기 개인의 의견을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회가 그러지 않도록 많은 발전과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규칙을 바꿀 때는 몰래 학생회만 불러 모아서 해버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폭 넓게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역시 학칙을 고칠 때 "전체 학생"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의복장규정, 학생의 소지품검사·휴대전화 등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된 것,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이나, 학생회 같은 학생자치조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 학내 공청회"를 열어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칙 중에 불만이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일단 학생회에 가거나 학급회장들에게 항의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다시 모아서 반영하자고 설득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이 학칙에 문제가 있고 무효이며, 다시 고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학교에서 갑자기 학생들을 불러 모으더니 이게 새로운 학교 규칙 안이라고 나눠주면서 의견을 내라고 하고, 바로 며칠 뒤에 학교 규칙을 새로 정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A. 그런 걸 보통 "날치기"라고 합니다. 비민주적이고 잘못된 방식입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 규칙을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때로는 생각할 기회도 주지 않고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대충 학교 규칙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

들의 의견은 실질적으로는 반영될 수 없고, 학생들이 참여할 방법도 없으며, 학생들을 들러리 장식으로 세운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민주적인 방식은 학칙을 고치는 것이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생각하고 토론할 시간을 가진 뒤에 의견을 모아서 고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학칙을 고치려고 하면 새로운 학교 규칙 안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끼리 토론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학생인권조례 내용과 새로 고친 학교 규칙 안을 직접 학생들에게 알리는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도와드릴게요~ ^^) 그런 과정에서 학생회 등이 같이 학교 규칙을 고치는 과정에 제대로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 좋을 것입니다.

Q.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인권도 무시하고 짓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학생들이 직접 행동한다. (2) 학생인권 옹호관이나 교육청의 학생인권교육센터 등에 도움을 얻는다. (3) 청소년인권단체 등의 도움을 얻는다. 등이죠. 먼저, 자신의 인권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인권침해를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니깐요. 학생인권조례는 우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서명운동을 하거나 시위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권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해봅시다.

하지만 이런 걸 해도 무시하는 일도 있고, 이런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인권

옹호관'이라는 학생인권에 대한 전문가가 인권침해를 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인권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고 인권침해에 대해 시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센터장으로, 인권침해에 대해서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교육청에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럽거나, 교육청·학생인권옹호관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는, 먼저 아수나로 같은 청소년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떻게 할 지 같이 이야기하고 더 나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칙 개정 사례들

2010년 10월,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경기도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학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학칙을 개정한 학교들이 많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학교들도 있었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으로 학칙 개정을 제대로 이룬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도 체벌금지 조치를 계기로 몇몇 학교들은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에서는 3개 학교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의 운영과 규칙을 바꾸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걸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남양주 가운고등학교

어떤 학교는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칙을 언제까지 개정하라고 해도, 그런 사실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조차 않습니다. 남양주 가운고등학교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 학칙 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2011년 초, 가운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가 먼저 나서서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칙 개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건의했고, 학교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설문지를 만들어 복사했고, 그 설문지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설문지에 학생인권조례의 관련 조항 내용이 안내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편파적이라며 배포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아니 그럼 자기들이 만들든가!) 끈질기게 요구해서 결국 학칙 개정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가 적극적인 준비를 갖추고 학칙 개정 심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전의 인권침해적이던 많은 학칙들을 개선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부천 소사고등학교

학칙개정 과정에서 어려운 일 중 하나는, 현실의 학생회가 충분히 민주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학교에서는 학생회장이나 학생회 임원을 학생 대표로 보고 학칙개정 과정에 참여시킵니다. 하지만 학생회 사람들도 그동안 제대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하는 활동

을 안 해본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자신의 개인적 의견에 따라 얘기하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학생회는 모범생/우등생인 학생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회의 의견은 학생들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0년, 부천 소사고등학교는 학칙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가지기도 했고 학칙개정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로 학생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학칙 개정안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학생 대표들 역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지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위원회 회의에 학생들이 참관하여 회의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알고 감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회의 참관조차도 거부했고, 이에 항의해서 학생들은 몇 차례 아침마다 운동장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몇 차례 이어진 학생들의 행동 끝에, 결국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참관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 대표들 역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전달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2011년 새 학기에 개정 학칙을 학교운영위원회가 한 차례 승인하기를 거부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소사고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학생인권을 조금 더 존중하는 학칙을 가지고 시행하게 됐습니다.

서울 선사고등학교

서울 선사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좀 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제정된 의지를 가지고 개정을 한 사례입니다. 선사고는 2011년 2월부터 학칙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선사고의 학칙은 '자율 규정'과 '타율 규정'으로 나뉩니다. 타율 규정은 어기면 벌을 받게 되는 것들입니다. 타율 규정에는 시험 중 부정행위, 폭력행위, 절도, 무단결석 등의 8가지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두발복장의 자유 등 사적인 부분은 모두 학생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율 규정은 강제성이 좀 덜한 것으로, '공동체 생활 협약'입니다.

선사고는 먼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식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임시로 준수해야 할 공동체 생활 협약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학생들에게 어떤 형태로 규칙을 만들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개학 후에 학급회의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타율 규정'을 정했습니다.

반면 '자율 규정'은 더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자율규정은 학생회에서는 학생협약을 만들었고, 학부모회에서는 학부모협약을, 교사들이 교사 협약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공동체 생활 협약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토론을 했습니다. 공청회 후에도 다시 좀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들을 2개월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급회의 토론, 전교대의원회 토

론 등을 통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 의견들까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서, 7월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동체 생활 협약'이 결정됐습니다. 선사고는 이 협약(자율 규정)에 관해 1년에 2번 이상 각각 자신들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또한 이에 대해 상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고쳐나가기도 합니다.

시흥 장곡중학교

시흥 장곡중학교는 2010년 혁신학교로 지정 받아서 수업 혁신에 주력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장곡중학교는 학생자치를 통해서 학칙을 학생중심으로 개정한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장곡중은 학급회의 등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제대로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달 1번, 토요일에 학급회의를 통해서 학급에서 의견을 토론하고 모으고, 이를 그 다음 시간에 대의원들이 학급의 의견을 대변하여 대의원회의에서 전달하고 토론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의원회의에서 제대로 의견이 전달되는지 모든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대의원회를 전교에 방송으로 생중계해줍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학급 대의원 등을 통해서 잘 전달되고 대변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장곡중학교에서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기 전부터 이런 학생자치 방식을 통해서 학칙을 좀 더 학생들 중심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장곡중학교는 6개월 이상 학교에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학칙을 개정했고, 두발규제 등도 없었고, 치마 길이 등의 복장에 대한 규제들도 많은 부분 없애고 완화했습니다.

대안학칙

(예시안)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이후,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칙을 수정하라는 지침에 따라 많은 학교에서 교칙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학생들이 다니기 좋은 학교가 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하지 않은 방법들을 사용하는 편법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학칙을 만든다며 학생회 등 일부의 학생들만 참관한 자리에서나 심지어 그런 자리도 없이 만든 교칙을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교칙'이라 표방하고, 그 안에는 여전히 두발복장 규제나 기합 등 반인권적 조항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 졌을 때, 혹은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경우에 도움이 되고자 대안학칙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일종의 예시, '가이드라인'입니다. 학교의 상황에 따라 조금 더 학생들에게 적합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칙을 개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학교가 인권적 민주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교내생활규정

★ 목적

교내 생활에 있어서 학교구성원의 인격존중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규정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 구성원 간의 논의, 토론, 대화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생활에 관한 규정

제 1조 (등·하교)

- 1) 등교 시간은 학생들의 휴식권, 이동거리, 안전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사가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또한, 투표 등을 통해 전교생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 2)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통학로를 확보한다.
- 3) 학생이 지각할 경우 출결상황에 기재하는 것 외에 어떤 벌을 줄 수 없다.

제 2조 (용의·복장)

- 1) 학교에서는 학생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교복을 지정할 수 있다. 학생이 교복을 반드시 착용할 필요는 없다.
- 2) 용의복장은 타인에게 피해나 심한 불쾌감을 주는 복장 이외에는 모두 학생의 자유로 한다. (예: 나체, 교육활동 중 뒷사람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부피가 큰 머리 모양 등)

제 3조 (교내 시설이용)

- 1) 학생과 교사는 교내의 시설이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서는 안 된다.
- 2) 학생이나 교사가 실수로 기물을 파손해도 그로 인해 징계하거나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3) 교내 시설 이용에 교사·학생의 차별이나, 학생의 학년에 따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제 4조 (청소)

- 1)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이 주로 생활하는 장소를 직접 청소한다.
- 2) 교사가 학생에게 교무실 등 교사의 생활장소를 청소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
- 3)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는 논의를 통해 교사·학생을 모두 포함해서 순서를 정한다.
- 4) 보일러실, 화장실 등 시설 정비, 유지에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경우 청소를 외부의 업체에 맡길 수 있다.

★상벌

제 5조 (포상)

- 1) 포상의 종류
 - ① 인권상 : 교내평등증진, 폭력근절 등을 위해 힘쓰거나 자신 혹은 타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평소 생활에서 실천해 온 자에게 주는 상
 - ② 교내자치상 : 교내의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교내 자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활동을 해 온 자에게 주는 상

- ③ 진로연구상 :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진로를 위한 계획과 실행을 꾸준히 하는 자에게 주는 상
- ④ 선행상 : 평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열심히 하거나 모두의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 자에게 주는 상
- ⑤ 교내복지상 : 교내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건의하거나 힘쓴 자에게 주는 상
- ⑥ 환경미화상 : 교내의 환경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데 힘쓰고, 담당 구역의 청소를 성실히 한 자에게 주는 상
- ⑦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에서 논의하여 위의 예와 같은 여러 상을 제정할 수 있다.

2) 포상의 대상

- ① 교장·교감
- ② 교직원
- ③ 학생

3) 포상의 절차

- ① 상을 받을만한 자를 추천하는 추천함을 설치하여 추천을 받는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로 구성된 포상위원회에서 상을 받기에 적합한 자를 선정한다.
- ③ 포상위원회는 수상자에 대한 수상예고를 공지하고 일정기간동안 수상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제기 등을 접수한다.
- ④ 포상사실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4) 포상의 규칙

- ① 징계를 사유로 포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 ② 상장과 함께 상품, 상금 등의 부상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징계)

1) 징계의 종류

- ① 상담 : 징계위원회에서 지정한 시간만큼 교내의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 ② 인권교육이수 : 외부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권교육을 이수한다.
- ③ 공개사과 : 피해자에게 혹은 학교의 전 구성원에게 교내방송, 혹은 공개편지 등으로 사죄.
- ④ 교내봉사 : 교내의 청소 등.
- ⑤ 사회봉사 : 교외의 비영리 기관에서 봉사활동.
- ⑥ 특별교육이수 :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일정한 교육 이수.
- ⑦ 퇴학·강제전학 : 다른 학교로 의무적 전학 혹은 퇴학.

2) 징계의 경우

- ① 타인에게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
- ② 타인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 ③ 타인의 금품, 금전 등을 빼앗은 경우
- ④ 의도적으로 차별적 발언·행동을 한 경우
- ⑤ 공공기물을 의도적으로 파손한 경우
- ⑥ 집단적으로 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배제할 경우
- ⑦ 교내 선거 중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⑧ 결석, 결과 사유를 거짓으로 보고했을 경우
- ⑨ 교장, 교감, 교직원의 경우 교직원 징계사유에는 들어가지 않는 정도의 위 사유

3) 징계의 대상

- ① 교장·교감
- ② 교직원
- ③ 학생

4) 징계의 절차

① 신고

사건이 일어나면 누구라도 징계를 요청하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② 조사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한다. 조사위원회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대해 익명을 보장해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

사실이 징계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가 꾸려진다. 이 역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징계대상에게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④ 징계 실행

징계위원회는 징계 종류, 징계 기간에 대해 징계 대상자에게 알린다. 이 때 징계 사실과 징계 대상자를 게시판 등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다. 징계의 절차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가능하다.

5) 징계에 관한 규칙

- ① 피해자의 신분이나 직위에 따라 가해자를 가중처벌 할 수 없다.
- ② 단, 피해자에게 차별적 이유(장애, 가정형태, 성정체성 등)로 가해했다면 가해자를 가중처벌 할 수 있다.
- ③ 같은 성격의 사건으로 한 사람이 여러 번 신고될 경우에는 가중처벌 할 수 있다.
- ④ 징계위원회가 소집된 시기나, 징계 이행 중, 징계 이행 후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이외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Tip 교내생활규정에는 구성원을 규제하고 구속하기 보다는 학교에서 보장해야 할 최소한과 생활에서 서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을 명시했다.

교내 시설의 이용, 청소 교사와 학생 간에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청소 등을 하라고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타인이 명령한 대로 힘의 관계에 따라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한 장소를 남에게 미루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치우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좋기 때문이다.

포상 및 징계 포상 및 징계의 대상자는 학생 뿐 아니라 교사나 교장, 교감도 포함된다. 포상의 예로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상은 예로 들지 않았다. 상의 개념을 다른 이보다 성적이나 능력이 우수한 점보다는 학교 공동체 내에서 얼마나 공헌했는지, 혹은 자

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보았다. 징계는 교사고발이 탄압당할 위험성, 괴롭힘 등을 막기 위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고 징계를 이유로 징계 내용 외의 다른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징계를 받는 이유에도 교사 지시 불이행 등 교사가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리고 악의를 품고 한 행동 등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교사에게 용서를 비는 형식의 징계보다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학교 구성원 전부에게 사과를 하는 방식, 자기 자신이 반성하고 잘못된 점을 깨닫게 되는 방식의 징계 방식을 택했다.



교육활동에 관한 규정

★목적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준비·진행하는 과정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권과 동시에 휴식권을 보장한다.

★교육활동

제1조 (교육활동 선택)

- 1) 기본학과를 제외한 특별활동, 기타 선택과목은 학생이 선택한다.
- 2) 종교과목은 반드시 대체교육활동을 마련한다.
- 3) 교사가 임의로 과목을 변경할 때는 학생들의 동의를 얻는다.

제2조 (교육활동 계획 및 준비)

- 1) 교사는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담당학년의 학생들에게 담당과목에 관한 교육활동 의견을 취합한다.
- 2) 학급에서는 학생들 중 과목담당교사와 함께 교육활동준비를 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관한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학급임원을 정한다.

제3조 (교육활동 진행과 지도)

- 1) 교육활동 중 교사가 학생을 제지하는 상황은 다음에 한한다.
 - ①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목이 집중될 정도로 큰 소음, 파열음을 내는 경우 예) 책상을 주먹으로 큰 소리 나게 치는 등
 - ② 다른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위협할 경우
 - ③ 교실 내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 ④ 방화를 하는 경우

⑤ 기타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

- 2) 부득이하게 교육활동 중 퇴실조치를 내려야 할 때에는 학생에게 3번 이상 교육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
- 3) 교육활동 중의 여러 규칙(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등)은 교사와 학생이 논의를 통해 정한다. 단, 물품의 압수, 체벌 등의 반인권적 행위는 규칙에 포함될 수 없다.

제4조 (교육활동 평가)

- 1) 학기가 끝나면 담당과목별 교사는 학생에게 교육활동방식, 내용 등에 관한 평가의견을 모은다. 이 때 학생의 이름과 학번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
- 2) 교사는 교육활동평가를 반영한 교육활동계획서를 학생에게 공개해야 한다.

★휴식

제5조 (휴식에 관한 절차)

- 1) 학생은 하루 2시간에 한해 허가 없이 쉴 수 있다.
 - ① 휴식의 장소는 교내여야 하고, 학과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 어디든 무관하며 교사가 지정할 수 없다. 단, 휴식 신청 시간 이후 과목담당교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 ② 학생은 휴식시간을 해당 시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2) 학생이 교내 보건시설이용을 원할 시 반드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3) 교육활동 중 질병으로 인해 교외의 의료시설 이용이 필요한 학생은 아무 절차 없이 조퇴할 수 있도록 한다.

Tip 교육활동에 관한 규정에서는 학생의 교육활동 선택권은 물론 학생들이 직접 그 내용과 방식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활동 계획을 짜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의견, 기타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사에게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활동 진행과 지도 통상 교사는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를 이용하거나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등의 사소한 경우에도 체벌, 기합 등의 벌을 준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 40명의 인원이 한 시간 가까이 교사 한 사람의 강의에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육활동에 학생들의 집중을 이끌어 낼 때, 규제와 벌을 주는 방식 보다는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교수방법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구성해 갈 수 있는 교육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 만약 위에 열거한 사항처럼 극단적 상황이 있다 해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반인권적 수단이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물리적 제지를 할 때에는 폭력적 상황에 대해 (학생 간 구타라든지) 그 행동을 중지하기 위해 팔을 붙잡아 행동을 막는 등의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

휴식에 관한 규정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교사의 허가 없이 쉴 수 있게 했고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교내 보건시설의 이용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명기했다. 많은 교사들이 이런 경우 피병이라거나 학습 분위기 저해 등을 이유로 보건시설 이용을 막거나 병원에 가기 위한 조퇴를 금지한다. 하지만 이는 성적과 학습 분위기를 학생의 건강, 생명과 맞바꾸는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학교 출결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학생에게는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사는 학생의 교육 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고 도울 의무가 있다. 본 규정은 이러한 학생들의 권리를 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 출석 및 결석 등에 관한 것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2조 (정의)

- ① 출석 : 학생이 정해진 날에 학교에 등교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
- ② 결석 : 학생이 정해진 날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거나 학교에 있더라도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 결석의 기준은 하루 단위로 정한다.
- ③ 지각 : 학생이 하루의 교육활동이 시작되는 시간보다 늦게 등교하여 일부 교육활동만 참여하는 것. 늦게 등교하여 일부 교육활동에 빠졌으나 하루 교육활동의 약 반 이상에 불참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조퇴 : 학생이 학교에 등교한 후 하루의 교육활동이 끝나는 시간보다 일찍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
- ⑤ 결과 : 개별 교육활동 단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

제3조 (출결에 대한 처리)

- 1) 학생의 출결 상황은 출결점수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결석한 학생은 정원 외로 관리하여 유급 등의 조치를 취한다.

- 2)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등에 대해 출결상황 기록 외에 학생에게 별도의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3) 반복적으로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등을 반복하는 학생의 경우 교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이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조사와 상담을 비롯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 4) 학생이 학교 교육활동 참여의 동기가 저하되어 있는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참여와 출석을 강제하기보다는 학생의 교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4조 (결석의 예외)

- 1) 다음 경우에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거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때에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①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경우.
 - ② 병역 관계 등 공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경우.
 - ③ 학교장 또는 학급담임이 인정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 징계 등) 규정에 의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에 참여하는 경우.
 - 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조치,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의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에 참여하는 경우.
 - 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시보

호기간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임시보호 기간 등

- ⑦ 건강장애학생이 출석대신 ‘건강장애학생화상강의시스템’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교는 화상강의 과정이 포함된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은 ‘개별화 교육계획’ 과 ‘화상강의 출석 확인서’ 를 근거로 출석 인정)
- ⑧ 학생이 건강상 이유로 보건교사의 지도하에 보건실에 입실하는 경우
- ⑨ 학생 상담 및 지도와 관련하여 상담 교사 등과 상담을 하는 경우
- ⑩ 운동부를 비롯하여 특별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장 또는 지도 교사의 사전 결재를 받고 정규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⑪ 여학생 중 생리로 출석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 ⑫ 친인척이나 가족의 경조사(결혼, 회갑, 장례, 탈상 등)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⑬ 학생이 교사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 대체 교육 활동에 참여하거나 성찰교실이나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⑭ 원거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출 다음날 전입신고를 못한 경우. 또한 전출생의 경우 전출일은 전임교 출석으로 산입한다.
- ⑮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또는 학급담임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현장체험학습 계획서는 사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되,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에 제출하며, 사후에 현장체험 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5조 (병결과 기타결)

1) 병결로 처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결석 후 다시 출석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하였으나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2) 기타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학교장 또는 학급담임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기타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한 경우 (이사, 화재, 간병 등)
- ②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 또는 학급담임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각·조퇴·결과)

- 1) 지각·조퇴·결과 또한 제4조 결석의 예외와 같은 사유일 경우 지각 및 조퇴로 기록하지 않는다.
- 2) 질병으로 인한 지각·조퇴·결과는 학급담임이 출석부의 해당 일자에 그 사유를 명기하며 출결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Tip 학교 출결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본적인 학교 출결에 관한 절차 부분을 다루는 동시에 출결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병으로 인한 결석을 최대한 보장하고 결석이나 결과로 인해 출결상황 기재 이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별점 등) 되어 있다. 또 반복적인 결석의 경우 강제로 학교에 출석하도록 하기 보다는 교사가 결석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의 교내 자치활동을 지원하여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학생들의 더 행복한 학교생활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생들이 권리 행사와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익힐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학생회” 라 함은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회원으로 하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교내 학생자치조직을 말한다.
- 2) “동아리” 라 함은 교내 학생들이 주도하여 자신들의 개성과 특성을 살리고 취미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자발적인 자치모임들을 일컫는다.
- 3) “자치활동” 이라 함은 학생회를 비롯하여 언론, 문화 등 여러 동아리 혹은 개인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집회, 결사, 언론, 표현의 자유 등을 행사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활동하는 것 전반을 의미한다.

제3조 (자치활동의 자유와 독립)

- 1) 학교 내의 모든 학생자치활동은 그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학생은 다른 학생의 자치활동 역시 존중한다.

- 2) 학생은 교내 학생자치활동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기타 사회적 견해와 개성을 주장하고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3) 학교는 학생들 사이의 권리 침해나 충돌을 조정하는 경우와 동아리나 개인의 활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간섭할 수 없다.
- 4)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돕고 장려할 책임을 가진다.

★ 학생회 및 자치활동

제4조 (학생회의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모든 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회원, 징계로 권리를 제한당한 회원들은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학생회 회원들은 성적, 경제적 여유, 성별 등에 차별받지 않고 학생회 선거에 출마하거나 학생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학생회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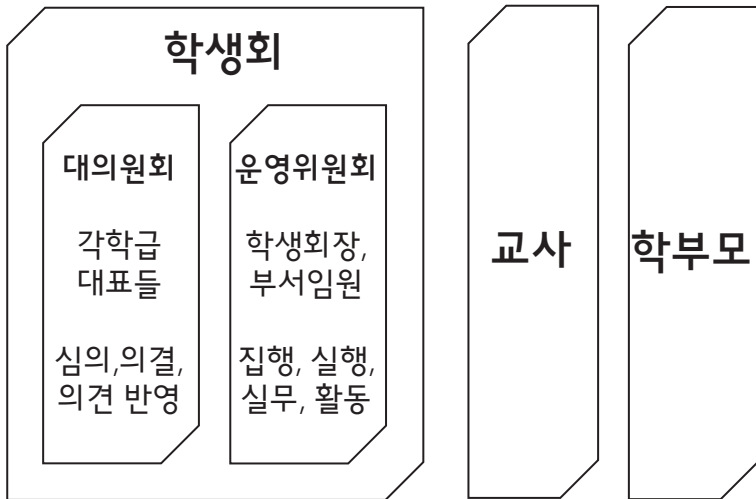
- 1) 학생회는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교내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 2) 학생회는 학생들의 권익을 대표하여 학칙 제개정, 학사일정 등 학교 운영에 대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낼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위원회)

- 1)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그외 각 부의 학생회 임원들로 구성된다. 각 부의 학생회 임원들은 학생회장 및 부회장이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모집하거나 추천하여 임명한다.

- 2)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 ① 학칙 제개정과 학사일정, 학교 행사 등 학교 운영에 관한 학생회 활동
 - ② 대의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 ③ 그밖에 대의원회의에서 결정, 위임된 학생회 활동에 관한 활동
 - ④ 기타 학생회의 여러 업무 및 활동 전반에 관한 집행
- 3)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주 1회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4) 운영위원회 임시 회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나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5)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결정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등)
 * 현행법상 학생이 위원으로 참가 불가능. 법 개정 필요.



제7조 (대의원회)

- 1) 대의원회는 전교 각 학급에서 선출된 대의원(학급회장 등) 2명씩, 그리고 학생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2)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회 사업 활동의 심의 및 평가
 - ② 학생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 ③ 학칙 제개정, 학사일정, 학교 행사 등 학교 운영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과 학생회의 입장과 방침 등 결정
 - ④ 기타 학생회의 여러 업무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참여
- 3) 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의원 사이에서 호선한다.
- 4) 정기 대의원회는 대의원회 의장이 매월 1회 소집한다.
- 5) 임시 대의원회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운영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대의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제8조 (선출과 임명) 학생회 임원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선출한다.

- 1) 학생회장과 학생회 부회장(3학년)은 학교 재학생 전체의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그 방법은 별도 세칙에 따른다.
- 2) 운영위원회의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 등은 학생회장단이 구성된 후 공개적으로 모집하거나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 3) 대의원은 각 학급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하여 2인씩 선출한다.

제9조 (임기)

- 1)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년에서 1개월 전후로 차기 임

원의 임명 때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 2)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거나 탄핵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 3) 징계 및 탄핵, 또는 사임으로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의 잔여 임기가 2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보궐 선거나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 4) 운영위원회 각 부서의 임원은 1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않은 경우에도, 학생회장단이 새롭게 선출되고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임기를 마친다.

제10조 (탄핵 및 소환)

- 1) 학생회의 임원은 학생들의 뜻에 따라 탄핵 및 소환될 수 있다. 학생회 임원의 임기가 1년이므로 임원에 대한 탄핵 및 소환 절차는, 가결되는 경우 임기 중 1회로 제한한다.
- 2) 대의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급의 학생들 중 1/3의 서명이 모이면 소환될 수 있다. 소환된 대의원은 학급 회의에서 1회 논의를 한 후 학급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대의원의 직을 잃는다. 대의원이 소환, 탄핵된 경우 바로 차기 대의원 선거를 한다.
- 3)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대의원회 2/3의 의결에 따라 탄핵될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된 공청회를 거친 후 전체 학생 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된다.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경우 학생회장은 바로 직위를 잃는다.

4)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전체 학생들 중 20%의 서명이 모이면 소환될 수 있다. 소환된 학생회장과 그 운영위원회는 활동을 일시 정지하며, 공개된 대의원회 회의에서 1회, 전체 학생이 참가 가능한 공개된 공청회를 1회 거친 후 학생 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된다.

제11조 (예산)

- 1) 학생회의 필요 경비는 ‘학교 운영 지원 회계’ 에서 지원한다.
- 2) 그밖에 학생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모금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사업을 할 수 있다.
- 3) 학생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 4) 학생회장은 회계 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편성한다.
- 5) 예산 확정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위 1항의 과정을 따른다.
- 6) 학생회장은 회계 연도 만료 2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학교는 명백한 횡령이나 유용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학생회의 활동의 내용 등을 이유로 학생회 예산 지원을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학생회 활동에 간섭할 수 없다.

제12조 (기타 학생 자치활동)

- 1) 학생들은 학생회 활동을 비롯하여 사회적 정치적 주장을 가지고 동

아리를 결성하거나 개인적으로 교내외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들 또는 동아리를 정치적 주장이나 활동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그 운영에 간섭할 수 없다.

- 2) 학생들은 언제든지 대의원회 등을 참관하고 학생회 활동에 대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 운영에 대해 참관하고 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학생회는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보고하거나 알리는 활동을 임기 내 4번 이상,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과 결정 사항 등은 매 회기마다 공개되어야 한다.
- 3) 학생들은 학생회 운영에 관해 민주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전체 학생의 10% 이상의 서명을 모아서 특정 사안에 관해 대표를 구성한 경우 대의원회와 같은 자격으로 대의원회에 참여하여 그 사안에 관해 안건을 발의하고 의결할 자격을 가진다.

★ 동아리

제13조 (동아리의 운영)

- 1) 교내의 학생 중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 간의 친목, 개성 실현을 위해 동아리를 만들고 싶은 학생은 성적, 경제적 여유, 성별 등에 차별받지 않고 동아리를 설립하여 활동할 권리가 있다.
- 2) 학교는 교내 동아리의 성격과 지향점에 차별을 두지 말고 모든 동아리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활동을 독려해야 한다.
- 3) 학생은 동아리를 설립함에 있어서 학교나 학생회에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학생회에 신고, 등록되지 않은 동아리는 공간과 재정 등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4)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들은 자의적인 이유로 동아리를 해산시키거나 그 운영에 간섭할 수 없다.
- 5) 학생은 동아리의 운영, 자치활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 공간에 대한 지원을 학생회나 학교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동아리 지원금 및 공간은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학생회의 논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배분되며 개인적 친분 등에 관계없이, 필요한 동아리들에게 적정하고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 6) 동아리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상황에 따라 학생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동아리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사안이 논의되는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

제14조 (동아리의 해산)

- 1) 신고, 등록된 동아리가 해산할 경우 동아리 구성원은 학생회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2) 학생회는 대의원회를 통해 1년 이상 전혀 대내외 활동이 없는 동아리에 해산 조치를 내릴 권한을 가진다.
- 3) 학생회의 해산 결정에 이의가 있는 동아리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언론 동아리)

- 1) 학교 안에서 정기적으로 신문, 음향, 영상 등을 이용하여 언론 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언론 동아리로 분류한다.
- 2) 학교는 학생들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여론 형성 등을 위해 언론동아리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교 측에서 발행, 운영하는 언론을 제외하면 편집권을 가질

수 없으며, 학생들의 자치적 언론 활동에 대해 검열, 간섭할 수 없다.

- 3) 학내 언론 동아리의 언론 활동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학교구성원 등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요구할 경우 학생회장과 언론 동아리 담당 교직원 1인이 이를 중재한다. 만일 학생회장 또는 언론 동아리 담당 교직원 등이 이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 대의원회의에서 임명한 학생 1인, 교직원회의에서 임명한 교사 1인이 대신 업무를 수행한다.
- 4) 언론 동아리 중 교내에서 시설이 제한된 방송 장비를 이용하는 동아리는 불가피하게 방송부 1개로 제한한다. 단, 다른 동아리도 학생회와 방송부 등과 협의하여 방송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 5) 학교 내의 언론동아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Tip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에서는 학생회나 동아리 대의원회 등의 제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의회와 행정부의 형태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최대한 장려해야 하고 학교에서 이를 심의하거나, 금지할 수 없도록 했다. 학생 자치가 그냥 놀이이거나 형식적 연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 안에서 여러 모임들을 만들고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한다.

꼬리말

학생들이 학칙 개정에 직접 참여하여 학칙으로 개정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본 소책자가 학생들의 학칙 개정 참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소책자를 읽으신 모든 학생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꼭 학칙 개정에 참여하여 나와 내 친구들의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친구들에게 학칙 개정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동시에, 학생회와 선생님들과 함께 학칙 개정에 대해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학칙 개정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를 비롯한 청소년인권단체에 연락해주세요.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http://asunaro.or.kr/>